

안성 공도 센트럴카운티 임차인 모집공고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본 아파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임차인 모집안내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공급신청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급 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에 의거 공급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모집공고는 2026년 03월 06일(금)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며 임대 의무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10년까지 이고 최초 2023.10.13. 입주 개시한 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임차인 모집일(2026.03.06.), 현재 만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는 공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청약접수 및 임차인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공급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공급신청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2023.09.26. 사용승인 받은 주택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임차인 모집안내문의 신청일자를 확인하신 후 공급신청 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급 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인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 및 임차인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며,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향후 주택도시보증금의 취급기관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본 주택의 부동산에 설정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회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후 주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의 감액 변경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공급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전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해지 되고 임차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현장수납 하지 않으니 지정된 납부일에 무통장(온라인) 입금하시고 계약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은 수납 관련하여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 확인 및 건물 점검·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장기일반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을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합니다.
- 본 주택은 타입 구분 없이 1인 1건 공급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되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여부, 분양전환 가격, 분양전환 대상자 등은 사업주체가 직접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하며,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에 한해 우선 분양예정입니다.
- 이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57에 위치하며 당사 임대홈페이지(<http://www.안성공도센터컬카운티.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모집공고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시	2026.03.06.(금)	2026.03.11.(수),03.12.(목) [2일간] 인터넷 청약(09:00~17:30)	2026.03.17.(화) 16:00 이후	2026.03.20.(금) ~ 03.21.(토) (10:00~17:00)
방 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임대홍보관 (주소: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59, 208호)

1. 공급내역 및 임대조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규정에 의거 안성시청 주택과-21234호(2021.06.16.) 임대주택 공급신고
- 사용승인 : 안성시청 주택과-35226 (2023.09.26)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57
- 공급규모 : 지하 1층 ~ 지상 25층 7개동 총 533세대 중 잔여 20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4월 예정
- 공급대상(10년 장기일반임대)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타입	공급 세대수 (거주자 지역 제한 없음)	세대별 주택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 차장 등)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
			세대별 공급면적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2026-950017	84A	12	84.8603	24.8279	109.6882	35.2506	144.9388	48.5071	
	84B	8	84.9271	24.8867	109.8138	35.2782	145.0920	48.5453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임.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층별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계약 후 15일 이내	입주시
84A	1, 2층	250,000,000	60,000	5,000,000	20,000,000	225,000,000
	3, 4층	260,000,000	60,000	5,000,000	21,000,000	234,000,000
	5층~	265,000,000	60,000	5,000,000	21,500,000	238,500,000

84B	1, 2층	250,000,000	60,000	5,000,000	20,000,000	225,000,000
	3, 4층	260,000,000	60,000	5,000,000	21,000,000	234,000,000
	5층 이상	265,000,000	60,000	5,000,000	21,500,000	238,500,000

- 공급세대는 2023.09.26 사용승인 되었으며 세대를 직접 관람 할 수 있고, 계약 후 1개월 이후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계약일 1개월 이후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선택 안내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각 타입별 임대조건을 기본형 또는 선택형A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선택한 임대조건은 임대차계약 갱신(입주 후 2년) 전까지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위 : 원)

타입	층별 구분	기본형		선택형A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84A	1, 2층	250,000,000	60,000	230,000,000	143,300
	3, 4층	260,000,000	60,000	240,000,000	143,300
	5층 이상	265,000,000	60,000	245,000,000	143,300
84B	1, 2층	250,000,000	60,000	230,000,000	143,300
	3, 4층	260,000,000	60,000	240,000,000	143,300
	5층 이상	265,000,000	60,000	245,000,000	143,300

■ 타입 표시 안내(전용면적별 타입 표기방법)

- 청약시 타입은 84A 또는 84B로 선택합니다.

■ 임대무기 :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 (최초 임대개시일 2023.10.13.)

■ 임대조건 변경 및 임대차 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및 갱신 계약시에 사업주체의 기준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택도시기금

- 상기 임대주택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써 세대당 아래 내용의 주택도시기금이 건설업체에 대출되었습니다.

- 본 주택은 타입 및 세대별 84A형:100,000,000원/ 84B형:100,000,000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우리은행을 통해 지원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부지 및 건물에 우선 설정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중에는 사업 주체가 납부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타입별 임대조건은 임대인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월 임대료는 단지여건 및 각 타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기 임대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기본시설 및 발코니 확장 추가시설(샤시는 기본시설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항에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료 증액에 따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잔금 납부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단, 입주 시 한번 납부하고 퇴거시 반환)
- 상기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최초 임차인 모집일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아래표의 부담 비율로 분담 납부합니다.
- 상기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동안 다음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증에 가입하여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상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보증대상	임대보증금 전액(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금액)
보증료	보증기관의 보증요율에 의함
부담주체	사업자 75%, 임차인 25%(매년 보증수수료를 재산정함)
납부방법	APT 관리비와 함께 포함하여 납부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일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모집공고일(2026.03.06.)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개별 청약신청은 가능하며,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청약자가 동일하여야 함.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계약자격조건 (계약신청자의 나이 등)의 판단기준입니다.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 타입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시 1인 1건에 한하여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중복신청시 (예 84A 1건, 84B 1건)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신청자격 미달 등)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타입별 900%의 예비임차인을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3.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 청약 및 당첨자 발표

청약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2026.03.11.(수), 03.12.(목) [2일간] 인터넷 청약(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모바일) 청약홈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취급은행 :은행영업 시간까지	2026.03.17.(화) 16:00 이후 - (PC, 모바일) 청약홈 (www.applyhome.co.kr)

※ 청약신청은 지정된 접수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임대홍보관에서 현장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이용 시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민간임대	o						

■ 청약신청 안내

구분	청약신청 절차 안내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이용안내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정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이용방법 및 절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민간임대주택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민간임대주택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납부 방법
모든 타입 공통	100,000원 (금일십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IM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4. 당첨자 발표 및 환불방법

■ 당첨자 추첨 및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임차인 선정 : 신청 타입별 900%를 무작위로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확인 방법
2026.03.17.(화)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환불 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임차인)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환불계좌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 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 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3.20.(금) ~ 2026.03.21.(토) 10:00 ~ 17: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59, 208호 안성 공도 센트럴카운티 임대홍보관	예비임차인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 ※ 청약 신청하여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예정입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하며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체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용도 : 계약용) 1통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용도 : 계약용) 1통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본인 계약체결시 서류 외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계약 위임용) 1통, 위임장 1통(계약 장소 비치,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금회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3.06.)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등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공급 신청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타인명의로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주택 계약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사업주체에서 임의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당 임대주택을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은 취소되고, 전대인 및 전차인 등 모두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주택은 당사에서 환수 조치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국민은행	245337-04-009561	(주)한토건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입금방법 : 101동 101호 흥길동 당첨자의 경우 계좌 입금 시 입금자명 “101101 흥길동”으로 입금 바람)

- 당사 임대홍보관에서는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임대보증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미작성시 당첨자 효력이 상실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차 계약금, 잔금 등 임대보증금의 납부 약정일에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해당일에 상기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임대보증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임대홍보관에서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알선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임차인)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정부정책·금융기관·사업주체의 사정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본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가입대상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당사에서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액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인 당사가 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APT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그 내역을 명시하고 관리비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합니다.

-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엄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임대주택 매각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임대 개시일(2023.10.13)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매각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 본 주택은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신 후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샷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계약자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입주자 사전방문

- 계약 후 입주지정일 전 입주자 사전방문은 임대홍보관에 전화 예약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4월 예정

-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일 부터 관리비, 연체료, 월임대료 등이 부과됩니다.

6. 유의사항 (반드시 읽어보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을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임대홍보관에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지관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스테디룸, 독서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였으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시니어클럽,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내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독서실 등)이 시공되며 있으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구분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임대보증금보증	일괄신청번호 2025-024175호	₩123,300,000,000(각 세대별 임대보증금 전액) (481세대 기준 금액)	발급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 사업주체

구분	사업주체(임대인 겸 시공사)
상호명	(주) 한 토 건 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여의도동, 대영빌딩 8층)
법인등록번호	110111 - 1568752

■ 임대홍보관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59, 208호

■ 홈페이지 : <http://www.안성공도센트럴카운티.com>

■ 임대문의 ☎ 031-654-6225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임대홍보관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사용검사 후)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세대별 보증금액 이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금액】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금액은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하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3항의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법 부칙<2015.8.28.>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舊)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채권자가 제4조제1항제3호의 보증사고 발생 이후에 주채무자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5.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6.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7.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8. 보증서 발급 시 보증조건과 다르거나 보증조건을 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변경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9.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보증채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사의 구상권 행사(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등)가 제한되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나. 임대차계약 개시일(개시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증액·갱신 포함)상 확정일자를 갖추어(법인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
 - 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거주이전 또는 타주소지 전입신고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17.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제3자로부터의 압류·가압류,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8. 보증채권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 또는 보전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9. 보증채권자가 제3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를 위반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 보증채권자가 제12조(대위 및 구상)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1. 보증서 발급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보증서발급 시의 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가. 주채무자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모든 담보권 설정금액의 합계액이 보증서 발급 시 주택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나. 주채무자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모든 담보권 설정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보증서 발급 시 주택가격의 90퍼센트(부채비율 100퍼센트 이상을 조건

으로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시 주택가격을 적용)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만, 초과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담보권 설정금액에서 공제함다.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22.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부채비율】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종료(목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종료된 경우를말함)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3. 주채무자가 파산·부도, 사업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보증사고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목시적 갱신을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③ “보증사고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파산·부도,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가 접수되어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날

④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사의 보증이행 없이 해당 사고 사유가 없어진 경우(2개 이상의 보증사고 발생 시 그 보증사고 사유 전부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목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 민법상 약정 및 법정 해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경공매시 배당요구에 따른 해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